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0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2024. 2. 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0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품목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시기를 입·출고 후 2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 타 이력추적관리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고려하여 5일로 그 시기를 연장하는 상위법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시기 개선(안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3)

- 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를 입·출고 후 2일 이내(기타식품판매업자는 입고 후 2일 이내, 재고정보는 7일 간격으로 연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그러나, 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경우 등록자의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정보입력을 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사 제도 간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지속적인 연장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3) 정보연계 시기를 2일에서 5일로 연장(완화)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자의 규정 준수율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단,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정보를 당일 입력하도록 단서조항 유지)

나. 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개선(안 제2조제1의2호, 별표 6)

- 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 중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사항을 연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이에 따라 생산제품 모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연계를 하지 않고 있으나, 생산제품 중 일부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입·출고에 관한 정보사항을 연계해야 하는지 불분명함
- 3) 따라서, 생산제품의 일부 수량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정보연계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비 규제 확인(2023.12.19.)

(2) 행정예고(2024.1.4. ~ 2024.1.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0호

「식품위생법」 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제2022-43호, 2022. 6.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의2호 중 “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를 “생산제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2일”을 각각 “5일”로 하고, 제3항 중 “상품바코드별 재고정보”를 “재고정보”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마목, 같은 항 제2호 마목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을 각각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정보의 점검 내용란 사목 중 “2일 이내”를 “5일 이내”로, “2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별표 6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산제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6 제1호 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로, 같은 호 나목6)과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고기준일자

7) 재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별표 6 제1호 가목1) 마), 다목5)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을 각각“유전자 변형식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의 연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3항 및 별표3,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입고·출고된 품목부터 적용한다.

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전자기록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는 해당 제품의 입·출고 후 2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경우 품목별 입고 정보 연계 시기는 입고 후 2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품바코드별 재고정보 연계 시기는 7일 간격으로 입력하여야 하고, 식품사고 발생 등으로 등록자에게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등을 통한 식품위해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자는 해당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제품의 재고량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등) ① (생략)

1. (생략)

가. ~ 라. (생략)

마.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 5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5일 -----

----- 재고정보 -----

제9조(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

2. 수입식품등의 경우

가. ~ 라. (생략)

마.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별표 3]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표(제5조 관련)

1.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 시 점검항목(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도 동일한 기준 적용)

구분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정보연계	사. 이력정보가 2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여부(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입고내역은 2일 이내, 재고내역은 7일 간격)	

[별표 6]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정보연계에 관한 사항(제8조 관련)

1. 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4조의4,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6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식품
--

2. 수입식품등의 경우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유전자변형식품--

[별표 3]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표(제5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구분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정보연계	사. 이력정보가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여부(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입고내역은 5일 이내, 재고내역은 7일 간격)	

[별표 6]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정보연계에 관한 사항(제8조 관련)

1. -----

<p>하는 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5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외)에 한함)</p> <p>1) ~ 5) (생략)</p> <p>6) 재고기준일자(<u>상품바코드 기준</u>)</p> <p>7) 재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u>상품바코드 기준</u>)</p> <p>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사 제품 제조용원료는 제외한다.)</p> <p>1) ~ 4) (생략)</p> <p>5) <u>유전자재조합식품</u> 표시</p>	<p>하는 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5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외)에 한함)</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재고기준일자(<u>삭제</u>)</p> <p>7) 재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u>삭제</u>)</p> <p>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사 제품 제조용원료는 제외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유전자변형식품</u>--</p>
---	---